

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

-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-

7월 1일부터는 발명자가 특허제도를 지금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허청(청장 전상우)은 발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.

이번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,

- 우선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하여,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,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, 길게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.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완벽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.
- 다음으로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,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.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를 완벽하게 등록받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.
- 그 밖에 출원인의 의사가 있으면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심사관이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, 출원인이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또한,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하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, 특허행정서식 종류를 통폐합하여 현재 사용되는 203개의 서식을 63개로 60% 이상 줄이고, 각 서식을 기재하는 방법도 간소화 하였다.

문찬두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특허제도 개선으로 인해 "발명자가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더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첨부]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

□ 주요내용

-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, 출원공개시까지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출원일로 소급(제42조제5항제1호)

※ 심사청구시에는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여야 함(제59조제2항 단서)

- 출원공개시까지 특허청구범위 제출이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(제42조제7항)
- 또한, 제3자가 그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할 경우에는 심사청구후 3월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토록 함(안 제42조제5항제2호)
- 기간 내에 특허청구범위 제출이 없으면,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(안 제42조제7항)

□ 입법효과

-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되므로 빠른 특허출원일 확보 및 특허권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
- 특히, 중소기업이나 개인 출원인이 전체 특허출원의 37%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손쉬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, 자신의 발명이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 조성

< 개인 및 중소기업의 출원비율 >

년 도	2001	2002	2003	2004	2005
전체출원건수	104,612	106,136	118,652	140,115	160,921
개인(비율)	20,850 19.9%	19,662 18.5%	21,275 17.9%	22,104 15.8%	23,280 14.5%
중소기업(비율)	19,838 19.0%	19,467 18.3%	21,770 18.3%	23,446 16.7%	36,143 22.5%

-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에도, 학위논문 등과 같이 기술내용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, 약간만 수정하면 곧바로 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, 신속한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
- 또한, 특허권 취득 후의 이용전략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어, 최적의 특허권 보호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□ 기타 참고사항(외국의 입법 사례)

- 미국의 가출원(provisional application) 제도
- 청구항(claims)의 기재없이 발명에 대한 설명서와 도면 및 발명자의 이름을 미국특허청에 접수하면, 그 접수된 날을 가출원일로 설정
- 가출원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정규출원하면 가출원일로 출원일을 소급

< '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'와 '미국의 가출원 제도' 비교 >

특허청구범위 유예 제도	미국의 가출원 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규출원 • 1년 6월 전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수 있음 • 완전한 형태로 발명의 설명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시출원 • 1년 이내에 특허청구범위가 포함된 정규출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• 발명의 설명에 대한 형식·내용 제한 없음